

# 소상공인 정책자금(대리대출) 4분기 접수 개시 안내
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(성공보수, 서류작성 수수료, 보험가입 등)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,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- 제3자(브로커 등) 부당개입 사실 적발 시,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, 향후 공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가 배제됩니다. 또한,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☎ 전국 1357)

## 1. 접수 기간 : '24. 10. 21.(월) 10:00 ~

\*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

## 2. 접수 자금

세부자금명	대상	금리	한도	기간
일반자금	업력 무관 소상공인	기준+0.6%p	7천만원	5년(2년거치)
긴급경영안정자금 (일시적경영애로)	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	기준금리	7천만원	5년(2년거치)
청년고용연계자금	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%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	기준금리	7천만원	5년(2년거치)
소공인특화자금 (운전)	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	기준+0.6%p	1억원	5년(2년거치)
소공인특화자금 (시설)			5억원	8년(3년거치)

\* 정책자금 기준금리 : 3.12% ('24.4분기 기준, 기획재정부 고시, 분기별 변동)

\*\* 상세 지원내용은 안내자료 참고

## 3. 지원 내용

□ 지원대상 :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\*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대상에서 제외

□ 대출한도 : 소상공인정책자금(직대, 대리)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 
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

\* 재해자금은 대출한도(5억원)와 별도로 운용

□ 담보구분 : 신용보증서, 신용, 부동산

- 신용보증서 : 보증기관(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,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
\*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(연 1.0% 내외)가 별도 부과됨
- 신용, 부동산 : 금융기관에서 담보(신용, 부동산) 평가 후 대출진행

□ 대출실행 금융기관(18곳)

경남, 광주, 국민, 기업, 농협, 부산, 산림조합중앙회, 산업, 새마을금고, 수협, 신한, 신협 중앙회, 아이엠(舊 대구), 우리, 전북, 제주, 하나, 한국스탠다드차타드

□ 유의사항

-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, **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**
-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\*입니다.  
\* 단, '24년 10월 25일 이후 발급된 확인서는 '24년 12월 24일(화)까지 유효합니다.
-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,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,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\*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#### 4. 진행 절차

	확인서 신청·접수 (소진공 - 온라인 접수)	(보증서 신청·발급) (보증기관 - 온라인/방문 접수)	대출 신청·실행 (금융기관 - 방문 접수)
보증서부 대출	지원대상 여부 판단	신용·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	보증서를 통해 대출
신용·담보부 대출	지원대상 여부 판단		신용·담보 평가 후 대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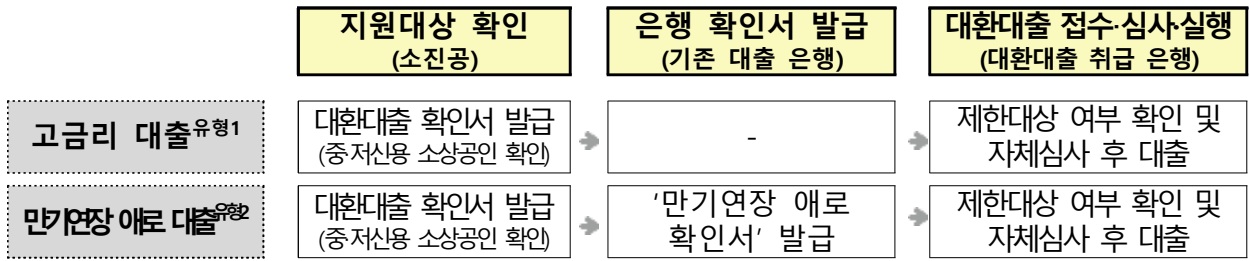
※ 신용보증서(지역신용보증재단)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·접수 바랍니다.

※ 확인서 유효기간 내,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□ (예외1)긴급경영안정자금(상시접수)

	재해확인증 발급 (지자체 - 방문 접수)	(보증서 신청·발급) (보증기관 - 온라인/방문 접수)	대출 신청·실행 (금융기관 - 방문 접수)
보증서부 대출	재해 피해금액 확인	신용·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	보증서를 통해 대출
신용·담보부 대출	재해 피해금액 확인		신용·담보 평가 후 대출

□ (예외2) 대환대출



5. 신청서류 안내

□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,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. 단,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확인서 발급 심사 시,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구분	제출서류 (최근 1개월이내)	신청자 제출	공단 확인						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분증</li> <li>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</li> </ul>		○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서류 종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</td> <td>보험자격득실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</td> <td>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,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</p>	구분	서류 종류	①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	보험자격득실확인서	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	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,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		○
	구분	서류 종류							
	①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	보험자격득실확인서							
	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	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,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</li> <li>-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</li> <li>- (필요시) 부가가치세신고서,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(신청자 제출)</li> </ul>		○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안내자료 참고)</li> </ul>	○								
우대조건	<p>※ 아래 서류 중 택 1 / 중복 우대 불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</li> <li>② 제로페이 가맹확인(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)</li> <li>③ 여성기업확인서</li> <li>④ 장애인기업확인서</li> <li>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</li> <li>⑥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</li> <li>⑦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</li> <li>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</li> <li>⑨ 소기업·소상공人公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</li> <li>⑩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(교육)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</li> </ul>	○	○						

6. 문 의 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☎1357)